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외 장
람	

제41호 2023. 10. 11.(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31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31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312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중속도로] 설정 고시	5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2073호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1
광양시 공고 제2023-2074호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6
광양시 공고 제2023-2075호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광양시 공고 제2023-2087호	진원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26
광양시 공고 제2023-2093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0
광양시 공고 제2023-2097호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광양시 공고 제2023-2119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광양시 공고 제2023-2121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광양시 공고 제2023-2122호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광양시 공고 제2023-2129호	광양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55

회 람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향만13로 33(중동)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0.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83-6, 1883-7	전라남도 광양시 향만13로 33 (중동)	20231011	20090902	광양향 향만시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180-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하탄치길 128	20231011	20081001	탄치 아래 마을 명에서 작명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옥룡면 청평길 37-6	2023. 4. 24.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1.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룡면 청평길 37-6	2023. 4. 24.	2023. 10. 11.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3. 10. 11.(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장내길 (1차종속도로)	길	태인동	태인동 1724-16	태인동 1724-16	도면 참조	49	8	20	63-1	63-6	마을지명에서 인용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안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23.(20일간)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10월 23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보건행정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61-797-4053 (FAX) 061-797-4151
(전자우편) furmi27@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광양시 관내 약국으로서, 시민 등에게 심야시간에(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
-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안 제4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안 제5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안 제6조)
- 보조금 관리(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23.(20일간)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10월 23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보건행정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61-797-4009 (FAX) 061-797-4151
(전자우편) jxlove0609@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및 응급진료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광양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장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에 따른 의료수가 기준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병원 관리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7조(의료수가)제2항 신설로 조례 일부개정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4. ~ 2023. 10. 23.(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10월 23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보건행정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61-797-4009 (FAX) 061-797-4151
(전자우편) jxlove0609@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수가)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u><신 설></u>	제7조(의료수가) ① -----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명 칭 :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다. 위 치 : 진월면 신아리 산1-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광양시장
-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3필지 13,494m²
- 나. 규 모 : 급경사지 정비 L=560m 등

4.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 : 2023년 5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5년 5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6. 열람기간 및 장소

- 장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안전총괄과
- 기 간 : 2023. 10. 12. ~ 2023. 10. 27.

7.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3. 10. 12. ~ 2023. 10. 27.
-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8. 위치도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번지 일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안전총괄과(061-797-3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토지 13필지, 편입면적 13,494㎡)

번호	시군구	동리	편입		지분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합계			13필지	13,494								
1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2	3,966		도		광양시청				
2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2-3	26		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359	박*구				
3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2-6	1,400		임		광양시청				
4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4	864	1/6	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52	안*호				
					1/6		경기 성남시 신흥동 226-41	안*호				
					1/6		경기 성남시 중동이지구 267	안*창				
					1/6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204	안*근				
					1/6		광양시 진월면 차사리4	안*석				
					1/6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75	안*범				
5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7	205		임						
6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1	27		도		광양시청				
7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3	2,501		임						
8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21-2	91		도		광양시청				
9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	111		임		광양시청				
10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	178		도		광양시청				
11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	2,726		도		광양시청				
12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10	881		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277-24	㈜태**업				
13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	518		도		광양시청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지장물 1건)

번호	시군구	동리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합계				1건								
1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	분묘		1식	광양시 공영로 39, 102-306	김*수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 공고 제2023-2093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5.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내용

○ 제9조(존속기한) 개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3. 10. 5.(목) ~ 10. 25.(수)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주민복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813

- 팩 스: 061-797-259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jin7996772@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3. 주요 내용

-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 (당초) 저소득층 생활안정 용자지원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변경) 저소득층 생활안정 용자지원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5. ~ 10. 25.(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주민복지과(우 57785)
- 전 화 : 061-797-2814
- 팩 스 : 061-797-2594 (팩스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gu5671@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용자지원 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로 한다.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용자지원 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 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 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 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 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 ※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읍자 대상자의 상환 기간까지 존속기한 연장 필요
3. **주요 내용**
 - 제18조(존속기한) 개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10. ~ 10. 3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불입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제2청사 농업정책과(우 57741)

○ 전 화 : 061-797-3375

○ 팩 스 : 061-797-2584 (팩스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bluegreen85@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	성		

붙임 2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물이용부담금의 영산강·섬진상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존속되어야 함에 따라 존속 기간 연장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10. ~ 2023. 10. 23.(14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10월 23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환경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 환경과)
(전화번호) 061-797-3155 (FAX) 061-797-2585
(전자우편) menwith@korea.kr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존속기한) ----- ----- 2028년 ----- --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개별 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여행사로 한정된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기한 종료(2022년)로 관련 조항 삭제

3. 주요 내용

-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확대(제15조)
 - 여행사 ⇒ 관광사업자,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

- 1박 이상 숙박 ⇒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포괄적 기재
-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지원 명시 등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조항 삭제(제22조)
- 출연기한이 202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11. ~ 10. 3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 전화: 061-797-1986, FAX: 061-797-4187, E-mail: yunms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관광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제22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5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u> <u>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u> <u>2.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한 경우</u> <u>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제1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u> <u>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u> <u>2. 관광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누리집·누리사랑방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u> <u>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5장 관광진흥기금 출연</u> <u>제22조(기금의 출연)</u> <u>①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출연 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u>	<u>< 삭 제 ></u> <u>< 삭 제 ></u>

광양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주차장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법」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 (현행)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개정)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0. 10. ~ 10. 23.(13일간)
- 예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5. 조례 개정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통과장, 전화: 061-797-2297, FAX: 061-797-2591, E-mail: jkj91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주차장 증진 조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주차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생략)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 5.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현행과 같음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